

(재)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 
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

---

# 검 토 보 고 서



행 정 소 방 위 원 회  
수석전문위원 양 권 석

## (재)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

### 1. 회부경위

이 동의안은 2009년 4월 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4월 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### 2. 제안이유

- 가. 도가 출연한 (재)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의 S/W지원센터가 도의 소프트웨어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의회(제226회 임시회) 동의를 받아 무상대부한 청주의료원 구병동(도유재산)의 대부기간(2004.4.30~2009.4.29)이 만료되었으나
- 나. (재)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이 S/W지원센터의 이전을 위해 추진하는 오창 U-플랫폼운영센터의 증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이 공사의 준공 및 충북S/W지원센터 이전할 때까지 무상으로 대부하고자
- 다.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임.

### 3. 주요내용

가. 위 치 :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554-6번지  
(청주의료원 구병동)

나. 규 모 : 연면적 4,368㎡중 2~3층 2,166㎡

다. 용 도 : 도내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한 벤처기업의 창업  
보육 및 경영지도

라. 대부기간 : 2009.4.30~2010.8.21(1년 4개월)

마. 신 청 인 :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 
(충청북도 출연법인)

### 4. 검토의견

본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은 충청북도가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소재 청주의료원 구병동 건물 중 2,166㎡를 (재)충청북도 지식산업진흥원이 S/W지원센터<sup>1)</sup>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09.4.30부터 2010.8.21까지 무상대부하는 내용임.

(재)충청북도 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대부는 당해 자치단체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게는 수의계약으로 무상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에 따라 2004.4.30부터 2009.4.29까지 무상대부 중에 있으며

---

1) 충북S/W지원센터는 충청북도가 직접 운영하다가 2004년 (재)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으로 이관하였음.

이번에 제출된 동의안은 대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대부기간을 2009.4.30부터 2010.8.21까지<sup>2)</sup> 갱신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다른의견은 없음.

붙임 :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.

---

2) 대부기간을 2009.4.30부터 2010.8.21까지(1년4개월정도)로 한 이유는 지식산업진흥원이 S/W지원센터 이전을 위해 증축공사를 진행중에 있어 건물 준공때까지 대부기간으로 하였음.

[참고자료]

# 청주의료원구병동 배치도

(4 층 )

[2009. 4. 현재]

창고	양실	탈실	샤워실	WC	WC	창고	계단	충북 장애인부모회 (40.08㎡)	WC	WC	지체 장애인 협회 (30㎡)	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 (36㎡)	지체 장애인 협회 (30㎡)	
청 주 의 료 원								복 도						
제1실습실		제1강의실		휴게실				충북 장애인 부모회 (30㎡)	충북장애인 정보화협회 (108㎡)		지체 장애인 협회 (30㎡)	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 (63㎡)		

(2층 ,3층 ) : 충북소프트웨어지원센터 → 2,166㎡

(1 층 )

탕전실	서고	의료약품저장실		계단	충북 정인지체인 애호협회 (47㎡)	WC (14)	WC (14)	한국 척수 장애인 협회 (38㎡)	충북 정인지체인 애호 협회 (72㎡)	
청 주 의 료 원					복 도					
노동조합	총무,경리팀		간 호 과		한국신장 장애인협회 (90㎡)	충북 정인지체 안애호협 회 (36㎡)	모 범 운전자 연합회 (36㎡)	신체장애인 복지회 (72㎡)		

(지 하 층 ) 청 주 의 료 원 → 561㎡